24. 12. 16. 오후 2:30 인쇄

##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허가대상 (허가기간)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사유별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 출원기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없음